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3101
------------	------

발의년월일 : 2017. 11.21.

발 의 자 : 김동규 의원 외 19명

1. 주 문

- “불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레저세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의 특성상 세금의 재원을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레저세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과 징수하는 지역이 달라서 장외 발매장 유치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실정임.
-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교부받을 뿐이며, 이는 징수 총액 대비 1.5%에 불과함.
-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 지역 국회의원 12명과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붙임>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

레저세는 사행산업의 특성상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의 재원은 근본적으로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하여야 함에도, 현실은 레저세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과 징수하는 지역이 달라 장외 발매장 유치에 따른 외부불경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제용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본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지자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안분하며,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교부받을 뿐이며 이는 징수총액대비 1.5%에 불과하다. 경마·경륜·경정장의 본장 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과 올 9월 두 차례에 걸쳐 장외 발매소 소재 지역 국회의원 13명(박완주, 원혜영, 박주선, 윤호중, 인재근, 박홍근, 정유섭, 정인화, 김현권, 박찬대, 김병관, 이재정, 김해영) 등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학계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여자 대부분은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불합리성을 비판·지적 하였고 합리적 배분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하나, 정부와 국회는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1월 일

안 산 시 의 회 의 원 일 동